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748호

나.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찬성자 11명)

다. 발의일자 : 2025년 5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립사진미술관과 서울시립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소장미술관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장미술관자료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 별도의 관리책임자 지정
(안 제23조제1항)

나.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화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신규 분관의 개관¹⁾으로 인해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는 소장미술관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별도의 분임 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시점에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동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²⁾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미술관 자료수집과 관련한 원칙을 신설하였고, 미술관이 소장품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2025년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신규 분관의 주요기능 및 개관 일정

-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사진 특화 공립미술관) : 2025. 05. 29.
-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뉴미디어 특화 공립미술관) : 2025. 11. 04.

2)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재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이와는 별개로 2001년부터 동 조례에 의거하여 소장미술관자료의 관리·수리·복원·복제·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는 소장미술관 자료를 작품과 자료로 구분하여 서소문 본관과 북서울미술관은 소장 작품을, 미술아카이브는 소장 자료를 관리하도록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소장미술관 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금년도에 사진·뉴미디어 매체에 특화된 신규 분관이 개관함에 따라 매체별 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증가에 맞추어 분임 형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추가적으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현행화가 요구되는 바임.

다. 주요 내용별 검토

(1) 분임 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안 제23조제1항)

- 동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에 대해 분임을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시장은 소장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시장은 소장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u>있으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동 조례안의 ‘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은 상위법령의 의무 부과를 이행하는 규정이므로,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별도의 분임 지정’을 신설하여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별도의 분임 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소장미술관자료 관리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현행에 비해 관리체계를 조직화하여 명확한 책임소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미술관 운영 시설 현행화(안 별표)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신규 분관의 개관과 기존 시설의 운영 종료에 따라 운영 시설 목록에 변동된 현행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 중인 명칭과 위치로 수정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현행화>

2025년 6월 기준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37)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서울특별시립남서울미술관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남현동 1059-13)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남현동)
서울특별시립북서울미술관	노원구 동일로204길 13(중계동 508)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서울특별시립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상암동 481-6)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상암동)
SeMA 창고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5동)	<삭 제>	
SeMA 백남준기념관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1 (창신동)	서울시립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1 (창신동)
SeMA 벙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 76(여의도동)	<삭 제>	
서울특별시립미술아카이브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평창동)
<신 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서울 도봉구 마들로13길 68 (창동)
<신 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9길 53 (독산동)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신규 분관인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사진 특화 공립미술관으로 지난 5월 29일에 개관하였고,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뉴미디어 특화 공립미술관으로 11월 4일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운영 종료 시설인 SeMA 창고는 실험적 미술 공유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나 해당 지역의 재개발 대상지 선정에 따라 2023년 10월에 운영 종료되었고,

SeMA 벙커는 미디어아트 공유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나 지하라는 특징에 의해 접근성 부족과 온습도 안정성 저하가 동반되어 2025년 1월에 운영 종료된 바 있음.

○ 따라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 목록을 현행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김예영(2180-8114)
------	----------------	-------	----------------

의안번호
2748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김기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제안 이유〉 ○ 분관 소장자료의 원활한 관리·출납을 위해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입법 요지〉 ○ 소장자료의 관리·출납을 위한 별도의 분임 관리책임자 지정(안 제23조제1항) ○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화함(안 <별표>)		
추진경과	○ '25. 5. 26.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찬성자: 김규남, 아이수루, 유정희 등 11명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현재 조례상 소장 미술관자료를 관리하는 '소장미술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자료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분관의 경우 별도 규정은 없음 → 동 개정조례안은 '분임'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분관 자료 관리 체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 운영의 일관성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함 ○ 아울러 현재 조례상(별표) 시립미술관 운영시설 내, 운영 종료시설*이 포함 및 개관(예정)시설**이 미반영되어 있음 * 운영종료: SeMA 벙커('25. 1. 13.), SeMA 창고('23. 12. 29.) ** 신 설: 사진미술관(개관 '25. 5. 29), 서서울미술관(사용승인 '25. 4. 22) →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와 법제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함 ※ 주요 입법 요지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 완료		
대응방안	○ 이견 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박성은(☎2133-4183)	담당 정익승(☎2133-4237)